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이원형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3179호

다. 제출일자 : 2025. 10. 20.

라. 회부일자 : 2025. 10. 23.

2. 제안사유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있으나,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와 과로 질병,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함(안 제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28. ~ 11. 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상 의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1) 교통운영과-18444(2025.12.3.) “제333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서 자동차 및 자전거 등의 운전 행위 금지 사항을 시민의 책무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 제44조²⁾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³⁾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⁴⁾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⑥ 생략)

3)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략)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4호 생략)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⁵⁾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⁶⁾에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⁷⁾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4)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⑦ 생략)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제43조	자전거등: 10만원
1의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제50조제8항	

※ 「도로교통법」 음주, 과로 등 관련 조항

구분 ⁸⁾	관련법령		
자동차등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금지 조항	음주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 약물 등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처벌 조항	음주	제93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넘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과로, 약물 등	제148조의2(벌칙)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등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 조항	음주	[자전거] 제44조제1항(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개인형이동장치] ⁹⁾ 제44조제1항(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 약물 등	제50조제8항(특정 운전자의준수사항) ¹⁰⁾
	처벌 조항	음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과로, 약물 등	※ 범칙금액 10만원

- '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¹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일평균 약 42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75,950건 중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는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

8)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9) 판례(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중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 제1항(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서 정한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10)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에 42건씩 발생(2024.12.23.)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일평균	전체사고 중 음주사고율(%)		
합계	75,950	41.6	7.3	1,161	122,566
2019년	15,708	43.0	6.8	295	25,961
2020년	17,247	47.1	8.2	287	28,063
2021년	14,894	40.8	7.3	206	23,653
2022년	15,059	41.3	7.7	214	24,261
2023년	13,042	35.7	6.6	159	20,628

정신성 의약품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구 분 ¹²⁾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10,411명	12,209명	10,626명	12,387명	17,817명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현황	57건	54건	83건	79건	113건

- 한편, 지난 '25년 4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¹³⁾을 통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 동 개정조례안¹⁴⁾은 음주,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1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13)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시행 2026. 4. 2.]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별칙)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시민의 책무)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유관기관들과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강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과로 또는 질병 상태의 운전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수단의 경우 과로·질병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말한다) 또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2.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현행 2항과 같음)